

전기에 대한 절도 성립 가능할까?

이 동 일 | 변호사(에너지전문)법무법인 미담

공기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전기는 우리가 현대문명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이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로 들을 수 없으며 냄새를 맡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이러한 전기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이 가능할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 범죄의 하나이나, 우리의 경우 '도둑질 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 속전코자 하는 자는 50만전을 낸다'고 하여 고조선 8조법에도 규율하는 범죄이고, 오늘날 형법 제 329조로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정보, 전기, 자동차 등 인류가 생산하는 재물이 다양해짐으로써 인하여 절도의 객체 또한 다양해졌고 이로 인하여 기존에 문제되지 아니하였던 절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20세기 초반, 전기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과 별론 으로 우리 형법은 제346조에서 관리 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력에 전기가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으므로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의 점유는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 관계로서 그 지배의 태양은 물건의 형상 기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물건에 대한 물리적 점유만이 아니라 그 물건이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점유하

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전기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92 판결을 소개한다.

갑은 용인시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고, 을은 갑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자이다. 한편 갑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본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이에 을은 갑을 상대로 시가 약 4,460원 상당의 전기 약 24kw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인 수원지법 2016. 9. 7. 선고 2016노964 판결은 갑이 을의 전기 약 24 kw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기사용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15492 판결은 "피고인은 인도 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를 점유·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계량기의 검침

결과는 1달 동안의 전기사용량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인도명령 집행 이후에도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위 사안의 경우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를 점유·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전기를 사용할 당시의 전기는 피고인이 점유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서 대법원 관례의 태도는 타당하고,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막연히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절도죄의 성립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전기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 당시의 전기에 대한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이 선결되어야 한다. 